성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『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』이 개정되어 성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조례의 내용을 전부 개정

3. 주요내용

가. 법률 명칭, 용어 변경사항 반영

-「성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」에서 「성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로 제명 변경(안 제1조)

-「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」에서 「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(안 제1조)

- 옥외광고업 ⇒ 옥외광고사업(안 제28조, 제29조, 제31조) 가로형간판, 세로형간판 ⇒ 벽면 이용 간판(안 제5조)

나.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규정(안 제7조)

- 전자게시대 등 디지털광고물 확산에 따른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

- 전자게시대 설치 위치 완화

다. 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안전점검, 현수막게시대 위탁에 따른 수탁자 선정 절차 개정(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)

라. 주민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14조, 제15조)

- 주민협의회 구성원 등 변동사항을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함

마. 수수료 반환 규정 사항 추가(안 제31조)

- 민원인이 부당하게 납부한 비용에 대한 반환 규정 신설

바. 광고물 등 허가·신고 수수료 및 이행강제금,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(안 별표 1, 별표 3, 별표 6)

- 항목 정비 및 금액 조정(안 별표 6, 7, 10, 12, 14, 15, 17, 18, 20)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「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입법예고 : 의견없음〔2017. 9. 21. ~ 10. 11〕

라. 성별영향평가분석 : 해당사항 없음

마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5.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『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』이 개정되어 현행 성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조례의 내용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

○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내지 제7조에는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였고, 안 제8조 내지 제11조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·위탁 절차와 방법을 명시하고, 안 제12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 용도의 건축물은 판매시설과 숙박시설로 하였습니다. 안 제13조 내지 제15조에는 자율관리구역 지정 및 주민협의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, 안 제16조 및 제17조에는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과 정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, 안 제19조 및 제20조에는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으며, 안 제21조 내지 제24조에는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절차 및 검사요령, 안전점검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 안 제25조에서 안제32조까지는 제거된 광고물의 관리, 행정대집행 특례 및 비용청구 등에 관한 사항,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옥외광고사업의 등록·관리,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의 교육,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『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』등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조례의 내용을 전부 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를 전부 개정・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